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동식크레인

2024-교육혁신실-846

제2편 안전기준

제1장 제9절 양중기 제147조 ~ 제150조

1 이동식크레인

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(수평 또는 선회)로 운반하는 설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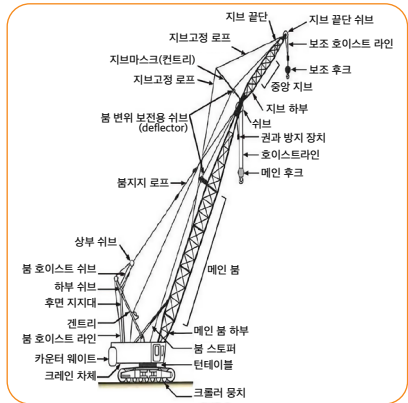
- 1 '건설기계관리법, 을 적용받는 기종기
- 2 '자동차관리법, 제3조에 따른 화물·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



차량탑재형 이동식 크레인 (카고크레인)



유압식 볼 휠 크레인 (하이드로 크레인)



크롤러 크레인 (무한궤도식 바퀴)




2 이동식크레인 법적 규제 현황

구분	제도명	대상 적용범위 (주요내용)		
제조·설치단계	안전인증	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.5톤 이상 ※「건설기계관리법」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는 제외		
사용단계	안전검사	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2톤 이상 크레인 ※ 「건설기계관리법」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, 집게크레인, 견인 및 구난차량은 제외		
구분	카고크레인	건설기계 기종기	집게크레인	구난 차량
대상	안전인증 대상	비대상	대상	대상
여부	안전검사 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
3 이동식크레인 주요 사고사례

<p>2021. 12. 떨어짐 사망 1명 부상 1명</p> 	<p>2021. 7. 떨어짐 사망 1명</p> 	<p>2021. 4. 부딪힘 사망 1명</p> 
<p>▶ 이동식크레인에 설치한 작업대에 탑승하여 방음벽설치 중 벨트슬링이 후에서 이탈되어 작업대가 기울어지며 떨어짐</p>	<p>▶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한 작업대에 탑승하여 나무 전지작업 중 떨어짐</p>	<p>▶ 마모된 클램프로 철골기둥 이동 중 클램프에서 기둥이 이탈하여 주변에 있던 재해자를 덮침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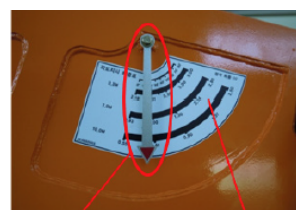
4 이동식크레인 주요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

<p>01 불법탑승설비 부착으로 떨어짐</p>  <p>▶ 이동식크레인의 불법 개조를 통한 불법 탑승설비 부착을 금지</p>	<p>02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에 맞음</p>  <p>▶ 적절한 줄걸이 용구 사용 ▶ 중량물 취급 시 인근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</p>	<p>03 구조부(붐, 선회부)파단에 따른 재해</p>  <p>▶ 작업반경 및 허용하중 초과 작업 금지 ▶ 작업반경에 따른 허용 인양하중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설치 ▶ 선회부 볼트 체결상태, 노후화 확인</p>
---	--	---

5 이동식크레인 안전조치

1 설계기준 준수 및 경사각의 제한 (안전보건규칙 제147조 및 제150조)

-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 (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)을 준수
-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



경사각 지시장치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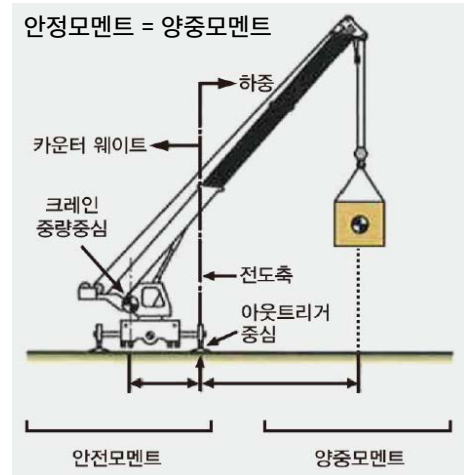
크레인 평형조건

- 안정모멘트 = 크레인중량* X 크레인 중량중심으로부터 전도축까지의 수평거리

* 전도축을 중심으로 카운터 웨이트 방향쪽 크레인의 중량

- 양중모멘트 = 양중물의 중심부터 전도축까지의 거리 X 양중물의 무게**

** 전도축을 기준으로 붐 방향의 크레인 중량을 포함



설계기준 미준수(작업반경 초과) 작업 중 재해 사례

- 정격하중 초과 작업 중 스윙포스트 고정 볼트 파단으로 붐대 도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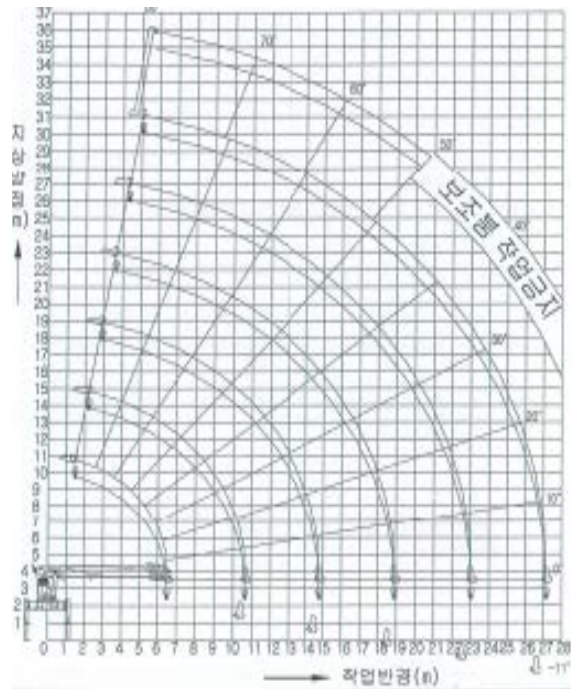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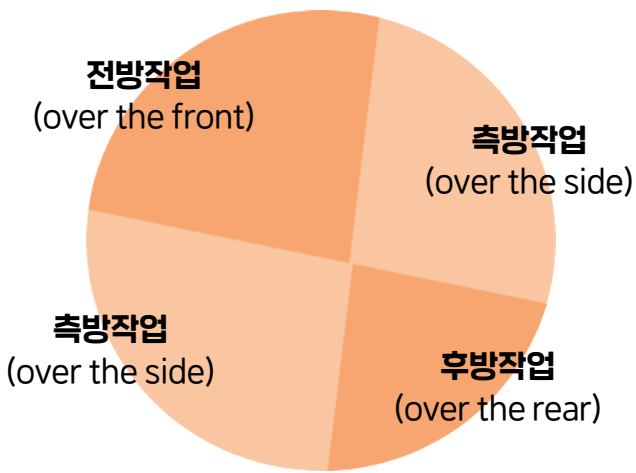
- 정격하중 초과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 전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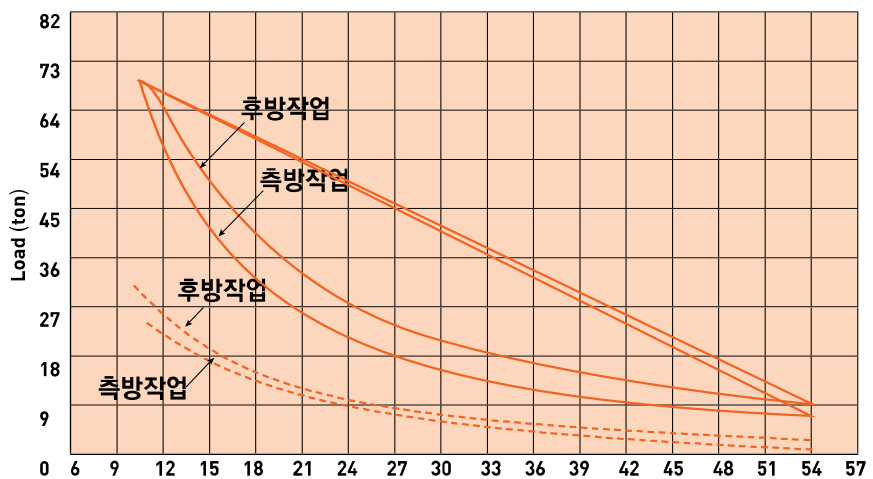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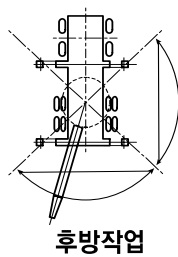
- 이동식 크레인은 작업방향, 아웃트리거 길이에 따라 들어올릴 수 있는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제조자가 하중, 작업방향, 작업반경을 설정하여 하중선도를 제공

- 운전자는 제조자가 제공하는 하중선도를 준수하여 작업 실시
- AML 등 과부하방지장치에 의해 작업반경*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모멘트가 증가하는 방향의 운전을 정지

* 크레인의 선회 중심선으로부터 육의 중심선까지의 수평거리



— 아웃트리거 사용
 - - - 아웃트리거 미사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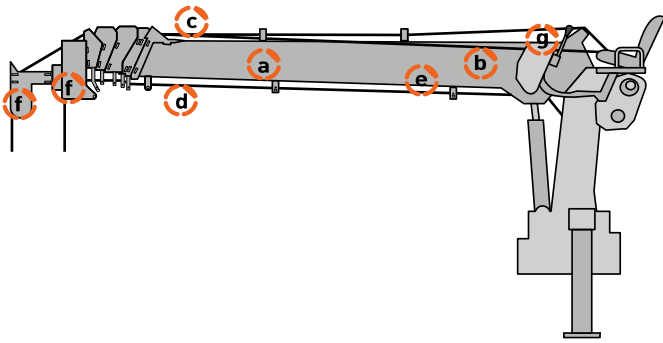
SCS325

UNIT : to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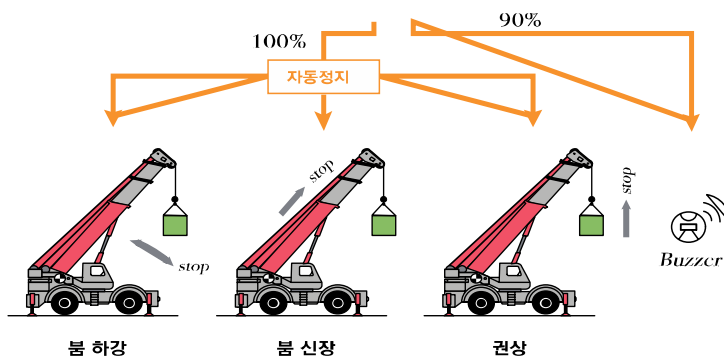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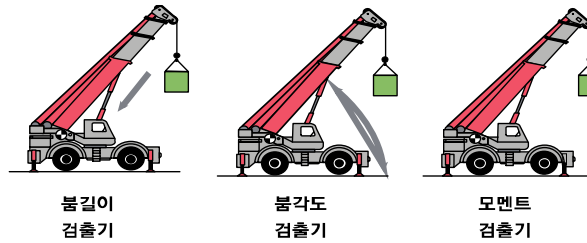
작업반경(m) 사용분	1.0	2.0	3.0	4.0	5.0	6.0	7.0	8.0	9.0	10.0	11.0	12.0	12.07
① 단봉	3.20	3.20	2.48	2.25(3.3m)									
② 단봉	3.20	3.20	2.48	1.83	1.45	1.28(5.6m)							
③ 단봉		2.35	2.48	1.80	1.33	1.14	0.93	0.75(7.8m)					
④ 단봉		1.13	1.13	1.13	0.93	0.82	0.72	0.68	0.60	0.55			
⑤ 단봉		0.86	0.86	0.86	0.73	0.58	0.49	0.39	0.35	0.32	0.31	0.29	0.29

AML (Automatic Moment Limiter)

■ 붐 길이/각도 센서를 이용하여 정격하중, 작업반경 등을 제어



항목	
a	붐 길이센서
b	붐 각도센서
c	보조원치 하중감지센서
d	주원치 하중감지센서
e	보조붐 장착 감지센서
f	권과방지장치
g	컨트롤러 및 모니터



작업 반경표(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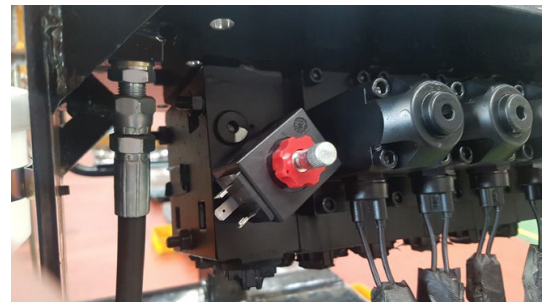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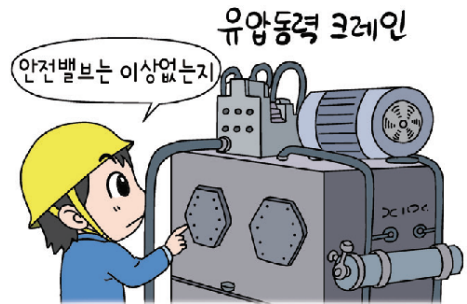
사용붐	작업반경(M)													
	1.0	2.0	3.0	4.0	5.0	6.0	7.0	8.0	9.0	10.0	11.0	12.0	13.0	
① 단붐	6.00	6.00	5.42	4.09 (3.4m)										
② 단붐		5.04	3.81	3.15	2.70	2.1 (5.8m)								
③ 단붐			3.33	2.71	2.32	2.04	1.83	1.37 (8.2m)						
④ 단붐			3.03	2.44	2.07	1.82	1.63	1.48	1.36	1.03 (10.6m)				
⑤ 단붐				1.59	1.34	1.17	1.05	0.95	0.88	0.81	0.75	0.70	0.63	

2 안전밸브의 조정 (안전보건규칙 제148조)

- 이동식 크레인은 대부분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, 유압장치가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건 때의 압력 이하에서 안전밸브가 작동되도록 조정

※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의 시험하중으로 작동하도록 조정가능

-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들어올리지 못하도록 유압펌프에서 생성되는 압력을 릴리프밸브로 제한 (과부하 방지장치 역할과 동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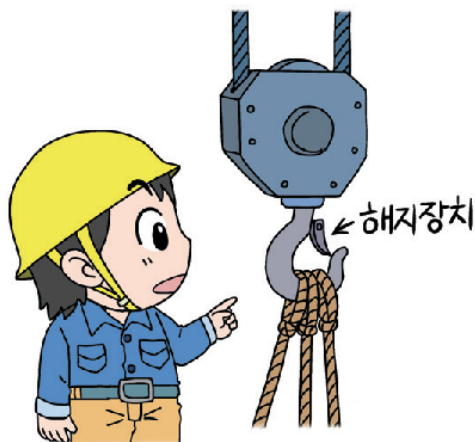


3 해지장치의 사용 (안전보건규칙 제149조)

- 이동식 크레인은 대부분 유압을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, 유압장치가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건 때의 압력 이하에서 안전밸브가 작동되도록 조정

※ 하중시험 또는 안전도시험의 시험하중으로 작동하도록 조정가능

-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들어올리지 못하도록 유압펌프에서 생성되는 압력을 릴리프밸브로 제한 (과부하방지장치 역할과 동일)



6 이동식크레인 점검표

번호	점검항목	양호	불량	조치
1	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여부 ※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제도 '16. 8. 18. 시행			
2	비상정지장치 정상 작동 확인			
3	과부하방지장치 정상 작동 확인			
4	붐의 볼트, 너트 풀림 확인			
5	턴테이블 선회부 체결볼트 정기 점검			
6	허용 작업반경 및 허용 하중 범위 내에서 작업 실시			
7	아웃트리거 정상 작동 확인			
8	중량물 인양 작업 시 주변 근로자 통제 확인			
9	불법 탑승설비 설치 금지			

[참고] 함께 볼만한 공단 개발 콘텐츠

-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매뉴얼 1 (2021-산업안전보건인증원-527)
- 이동식 크레인 재해예방 OPS(2022-산업안전보건인증원-374)
- 이동식 크레인 안전작업 매뉴얼(2016-건설-717)